

# 글로벌협력센터 운영 규정

제정 2022.12.19.

개정 2024.04.29.

개정 2025.02.17.

## 제 1 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글로벌협력센터(이하 ‘센터’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명칭)** 본 센터는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글로벌협력센터라 칭한다.

**제3조(사업)**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글로벌 대학 및 기관 등과의 교류 협력 및 자매결연 사업
2.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
3.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글로벌 협력 및 교류에 관한 사항

## 제 2 장 조 직

**제4조(조직)**① 본 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센터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. 센터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센터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.

③ 소속 직원은 센터장을 보좌하여 센터의 업무를 시행한다.

## 제 3 장 운영위원회

**제5조(설치)** ① 본 센터의 기본 방침과 중요사항의 논의 및 자문을 위하여 글로벌협력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**제6조(구성)**위원회는 글로벌협력센터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센터장이 맡는다.

**제7조(임기)**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**제8조(기능)**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논의 및 자문한다.

1. 글로벌 교류협력에 관한 사업 계획 수립 및 발굴
2. 글로벌 교류협력에 관한 사업 결과 평가 및 개선, 환류 사항
3. 글로벌 대학 및 기관과의 교류협정 체결 및 교류협력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
4. 글로벌 기관과의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

- 5. 국제협력 강화 방안 연구 및 국제교류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
- 6. 기타 글로벌 교류협력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연구·심의·평가에 관한 사항

② 생략

- ③ 운영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글로벌협력센터 직원으로 한다.

**제9조(개의)**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.

## 제 4 장 기 타

**제10조(기타)** 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### 부 칙

- 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- 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- 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5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